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정책참여 현황과 과제

김기현 선임연구위원
유민상 부연구위원

I. 문제제기

이 글의 목적은 청년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 청년정책 참여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청년 참여와 주도성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음.

- ▶ 2020년 청년기본법 제정으로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체계가 구축되었으며 청년정책 참여에 대한 법, 제도적 정비도 본격적으로 시작됨.
- ▶ 중앙정부의 청년정책은 청년기본법 제정 이전까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짐.
 - 중앙행정기관 중 청년 사업을 추진 중인 곳은 30개에 이르고 있으나 청년 업무를 담당하는 곳은 국/실 수준의 경우가 없고 관/단 수준이 2곳에 불과한 실정임(김기현, 2020: 74).
 - 중앙행정기관에서 추진 중인 과제는 179개, 예산은 1조 6,883억 원에 이르고 있으나 정책 추진 시에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곳은 국무조정실의 청년정책참여단과 온라인청년패널, 고용노동부의 청년고용정책 모니터링단과 여성가족부의 청년정책 참여플랫폼 정도임(김기현, 유민상, 변금선, 배정희, 차세영, 강정석, 이화진, 권향원, 이승호, 김문길, 박미선, 2020: 206).
- ▶ 지자체의 청년정책은 2015년부터 서울시를 출발로 정책추진체계를 구축해 오고 있으나 청년 정책참여는 여전히 미흡하며 기초 지자체 수준에서 정비가 요구됨.
 - 2015년 서울을 시작으로 2018년 인천을 끝으로 모든 광역지자체에 청년기본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청년정책기구의 위촉직 중 청년비율을 조례에 명시한 곳은 11개이며 참여기구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항을 담고 있는 곳도 11개에 그침.
 - 광역 및 기초 지자체 243개 중 청년정책기구가 구성된 곳은 절반보다 약간 높았고 청년위원 비율은 전국 평균 30.0%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이은주 국회의원실 보도자료, 2020. 10).

- ▶ 국제연합(UN)이나 유럽연합(EU)은 미래 청년정책 추진 전략과 관련하여 청년의 참여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제시하고 청년이 미래사회를 주도하는 역할 부여를 강조
 - 국제연합(UN)이 2018년에 발표한 2030 청년전략(Youth 2030: The UN Youth Strategy)은 첫 번째 우선순위 전략으로 청년 참여와 지지(engagement, participation and advocacy)를 제시(United Nations, 2018)
 - 유럽연합(EU)이 발표한 청년전략(Youth Strategy 2019-2027)에서 세 가지 영역 중 두 가지를 참여(engage)와 주도성(empower)으로 제안(European Union, 2018)
- ▶ 이 글의 목적은 청년정책에 있어서 참여와 주도성을 핵심적인 영역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청년 정책참여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있음.

II. 정부 청년 정책참여 현황 및 문제점

- ▶ 청년기본법에 청년 참여 관련 규정
 - 청년기본법에서는 제2조 기본이념부터 제15조 청년 정책참여 확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청년정책 참여의 목적과 필요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제2조에서 청년정책의 기본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삶의 전 영역에서 참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음. 제3조에서 청년정책을 정의하는 핵심개념으로 제시된 청년 발전에서 정책결정과정의 참여 확대를 포함함. 제4조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에서도 청년의 참여나 의견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제5조 청년의 권리와 책임에 청년들의 참여권을 명시하였음.
 - 제15조에서 구체적인 정책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청년 관련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함께 청년정책과제를 기획하고 추진하며 점검하는 과정에서도 청년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함.

[표 1] 청년기본법 청년 참여 관련 규정

조항	내용
제2조(기본이념)	① 이 법은 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종합적 청년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참여 촉진
제3조(정의)	2. “청년발전”이란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을 통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청년의 권리와 책임)	④ 청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국가·사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조항	내용
제15조(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청년정책 결정과정의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범위와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년 참여 현황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무총리는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청년 참여 현황을 공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⑤ 국무총리는 청년정책과제의 설정·추진·점검을 위하여 청년정책 전문가와 다양한 청년들의 참여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2020년 11월 10일에 인출

- 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 참여기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지 않음. 청년기본법안에서는 청년 참여기구에 관한 제안이 이루어진 바 있음. 신보라 의원 대표발의 법안은 청년 참여기구로 청년특별회의를 매년 개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정책전문가와 청년이 참여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음.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법안은 청년을 대상으로 구성하는 청년참여회의를 제안하고 있으며 이 위원회에서 제안한 과제를 심의,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표 2] 20대 국회 청년기본법안 청년 참여기구 관련 조항

법안	조항	내용
박주민의원 대표발의 법안 (의안번호 2006739)	제14조 (청년참여회의)	① 위원회는 범정부적 차원의 청년정책과제를 설정·추진 및 점검하고 제18조에 따른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년참여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 ② 청년참여회의는 국가의 주요 청년정책과제, 청년정책 추진과정 및 점검에 대한 의견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청년참여회의가 제안하는 과제 및 의견을 심의·조정하여야 한다. ③ 청년참여회의는 다양한 청년 당사자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밖에 청년의 참석대상 및 운영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보라의원 대표발의 법안 (의안번호 2000024)	제15조 (청년특별회의)	① 국가는 범정부적 차원의 청년정책과제의 설정·추진 및 점검을 위하여 청년 정책 전문가와 청년이 참여하는 청년특별회의를 매년 개최하여야 한다. ② 청년특별회의의 참석대상·운영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s://likms.assembly.go.kr>). 2020년 11월 10일에 인출

- 대상 중심 정책 중 청소년정책 사무를 다루는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 참여기구에 관한 구체적인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 청소년기본법은 국가와 지자체에서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정책 반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제5조의2)을 포함하고 있음. 이와 함께 각 지역의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총화하는 청소년특별회의를 개최(제12조)하도록 하고 있음.

- 청년기본법에서 참여기구 조항이 빠진 이유는 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로 자발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점과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임. 그러나 주요 선진국에서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아 정책에 반영하는 참여기구를 법,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어 법률로 정책 반영방식과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는 것이 필요해 보임.

- 2020년 8월 시행된 청년기본법과 관련하여 청년기본법 시행령이 제정되었음. 이 시행령은 법률로부터 위임된 위원회 위촉직 청년 비율을 제20조에 규정하고 있음. 국무총리와 지자체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50%, 그 밖의 위원회는 10%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음.
- 구체적인 각 위원회의 청년위촉비율은 제1회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안건으로 가결되었음. 50% 이상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외에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가 포함되었으며 30% 이상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록금심의위원회, 군인복지위원회가 포함되었음.

[표 3] 중앙정부 청년위촉 대상 위원회 범위와 청년위촉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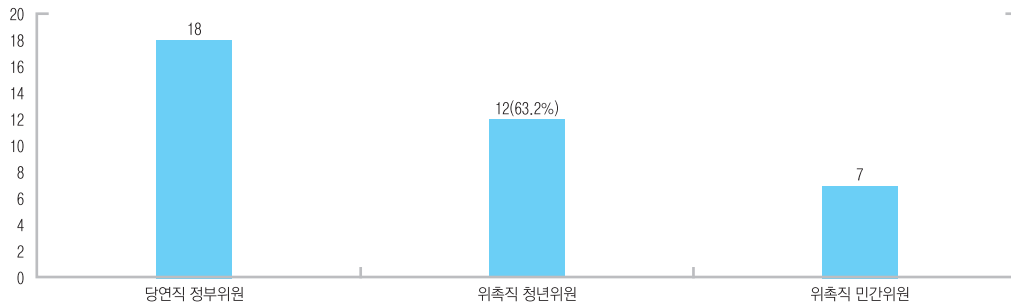
구분	위원회 수	해당 위원회(소속 및 담당 부처)
50% 이상	2	청년정책조정위원회(국무총리),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고용부)
30% 이상	3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대통령), 등록금심의위원회(교육부, 각 대학별 구성), 군인복지위원회(국방부)
20% 이상	8	미세먼지문제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대통령), 양성평등위원회, 국가보훈위원회(이상 국무총리), 학자금지원제도심의위원회(교육부), 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국방부), 자살예방정책위원회(복지부), 창업지원정책협의회(중기벤처부)
10% 이상	32	국가교육회의, 일자리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상 대통령),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소비자정책위원회,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위원회,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자원봉사진흥위원회, 문화다양성위원회,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이상 국무총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 평생교육진흥위원회,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 학습계좌자문위원회(이상 교육부), 여성과학기술인육성위원회(과기정통부),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기재부), 도시농업협의회(농림부), 공공디자인위원회(문체부), 외국인정책위원회(법무부),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중앙보육정책위원회(복지부), 청소년정책위원회,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가족친화인증위원회(이상 여가부), 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원회(중기벤처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환경부)

출처: 관계부처 합동(2020). 정부위원회 청년참여 활성화방안.

- 청년과 관련성이 높아 보이는 위원회 중 적용비율이 낮은 위원회는 10% 이상으로 규정한 국가교육회의, 일자리위원회와 최소 1명 이상으로 규정한 정책기획위원회, 고용정책심의위원회, 대상 위원회에서 빠진 최저임금위원회 등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20% 이상인 점을 고려할 때 이들 위원회의 청년위촉비율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중앙정부 청년 정책참여 현황 및 문제점

-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9월에 구성된 국무총리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위촉직 위원 19명 중 12명을 청년위원으로 선임해 50% 이상보다 높은 63.2%의 청년위촉비율을 보여주었음.
- 청년위원 위촉과 관련하여 서류와 발표, 면접심사를 거치는 엄격한 선발 절차를 거쳤는데 이는 선발 과정의 공정성을 고려한 조치로 보임. 다만, 전문가 위촉 과정은 당사자 동의 외에 위원회에서 위원을 선정하는 조치만 이루어져 청년과 전문가 위원 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유럽 국가들처럼 일종의 대의제 구조로 지역단위에서 대표를 선임해 전국단위로 올라가는 방식을 취한다면 공정성이나 형평성 문제를 덜 수 있고 대표성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2년 뒤 신규 위촉 시 선발 절차에 대한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또한 법률에 청년참여기구 법제화를 위해서 정치적 공정성을 담보하는 방안으로 지자체에서 선발하고 전국적인 사안을 논의하는 구조로 가져가는 것이 필요해 보임.



출처: 국무총리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홈페이지(<https://2030.go.kr/>). 2020년 12월 15일에 인출

[그림 1] 국무총리 청년정책조정위 위촉직 청년위원 수(2020년)

- 청년기본법 제정 후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에서는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청년정책 참여조직을 운영 중임.
- 오프라인 조직인 청년참여단은 150명으로 구성되며 전국 단위로 모집이 이루어지고 정책분야별로 구성되어 자료수집과 정책 모니터링, 정책과제에 대한 제안 등의 역할을 수행함. 온라인 청년패널은 전국단위로 1,000명을 모집해 구성되며 온라인의 장점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의견 청취가 이루어지고 정책과제에 대한 발굴 등의 역할을 수행함.
- 청년정책 참여기구와 관련하여 두 가지 정도의 개선이 요구됨. 먼저 국무조정실에서 운영하는 참여기구는 국가단위의 참여기구이므로 지역의 의견을 총화하는 전국청년원탁회의나 전국청년포럼과 같은 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음(김기현 외, 2020; 조진우·김기현, 2016). 다른 하나는 서울시에서 청년시민회의의 핵심적인 과제로 추진 중인 청년자율예산제나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시민참여예산제 혹은 청소년참여예산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청년들이 직접 예산 투입을 기획하고 실현해 나가는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될 필요가 있음.

[표 4]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 청년정책 참여조직 현황(2020년)

구분	목표인원(명)	내용
청년참여단	150	· 전국 단위로 청년참여단 모집, 정책분야별 구성 및 운영 · 정책분야 및 소주제 그룹 모임 참여, 자료수집 및 정책모니터링 · 청년정책 신규 및 개선과제 발굴
온라인 청년패널	1,000	· 전국단위 온라인 청년패널 모집 · 온라인을 통해 청년정책 개선과제 검토 및 의견제시 · 청년정책 의제 발굴

출처: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2020).

- 중앙부처의 청년정책 사업 추진에 있어서 기획부터 과정, 결과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청년 참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김기현 외(2020)는 정책사업 추진 시에 이를 모니터링하는 기구가 운영 중이고 모니터링단에 청년이 참여하고 있는지를 토대로 주요 청년정책 사업을 대상으로 정책환류 충실성을 진단하였음. 이 연구는 낮은 수준으로 진단 기준을 정하였으나 4개 사업은 두 기준 모두를 충족시키지 못해 '하'로 진단되었음.

- 2021년부터 청년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에서 제출한 시행계획을 평가하는데 좀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아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표 5] 중앙부처 청년정책 사업 청년 참여(정책환류 충실성) 진단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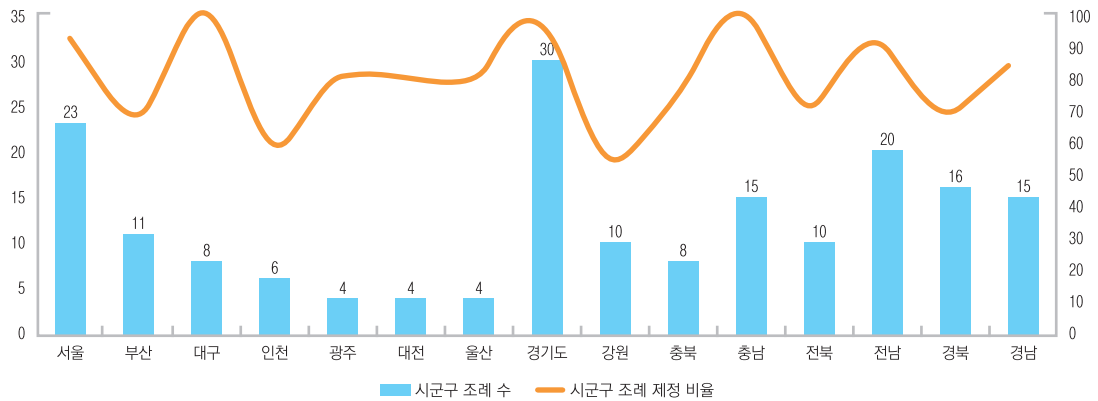
부처	사업	진단결과	근거
고용노동부	청년 내일채움공제	상	· 청년고용정책 참여단 운영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상	· 청년고용정책 참여단 운영
	공공기관 청년 고용의무제	상	· 청년고용정책 참여단 운영
	NCS 및 블라인드 채용	상	· 청년고용정책 참여단 운영
	일학습병행제	중	· 모니터링단 운영하나 청년 참여 부재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상	· 내일채움공제 서포터즈 운영
	청년예비창업자 사업화 지원	상	· 청년층 포함 시민고객 자문단 운영
	청년전용창업자금 지원	상	· 연령 고려한 국민참여단 운영
교육부	국가장학금, 학자금 지원	하	· 모니터링단 및 청년 참여 부재
	대학 기숙사	하	· 모니터링단 및 청년 참여 부재
국토교통부	청년 전, 월세 지원	하	· 모니터링단 및 청년 참여 부재
	청년 행복주택	상	· 행복주택 청년자문단 운영
보건복지부	청년희망키움통장	하	· 모니터링단 및 청년 참여 부재
금융위원회	사회초년생 신용 불이익 완화	중	· 모니터링단 운영하나 청년 참여 부재

출처: 김기현 외(2020)

III. 지자체 청년 정책참여 현황 및 문제점

▶ 청년기본조례의 청년정책 참여 관련 규정 및 문제점

- 2020년 12월 현재 17개 광역시도에서는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청년정책을 추진 중이나 시군구별로는 차이가 존재함.
- 각 시도의 시군구별로 조례 제정 현황을 살펴보면, 대구와 충남은 모든 시군구에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경기도(96.8%)와 서울(92.0%), 전남(90.9%)은 90% 이상의 조례 제정 비율을 보여줌.



출처: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s://www.elis.go.kr/>). 2020년 11월 30일에 인출. 기초 지자체 없는 세종과 제주 제외

[그림 2 시도별 시군구 청년기본조례 제정 현황(2020년, 개, %)]

[표 6] 광역 지자체 청년기본조례 청년정책 참여 관련 규정 현황(2020년 12월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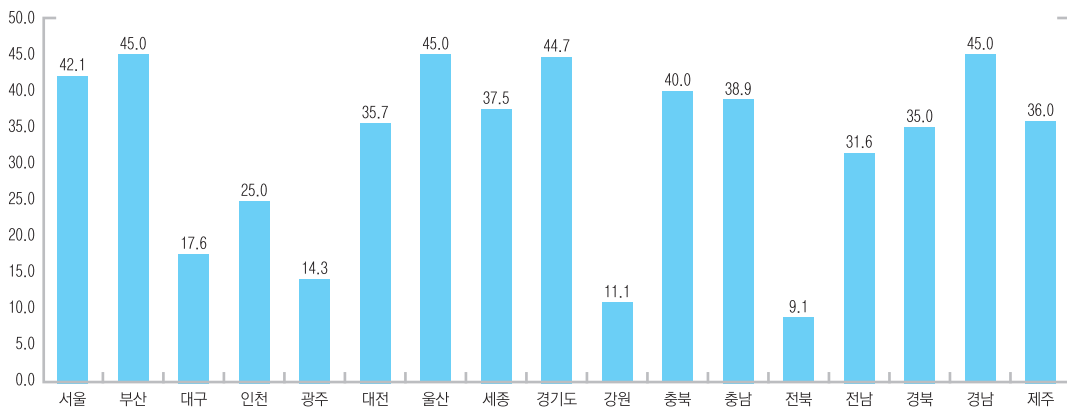
구분	제정일	개정일 (최근)	위원회 청년위촉규정	위원회 청년위촉비율	참여기구 규정	청년지원 조직 규정
서울	2015. 01. 05.	2020. 10. 05.	○	1/2 이상	x	○
부산	2017. 05. 31.	2020. 02. 05.	○	1/2 이상	x	x
대구	2015. 12. 30.	2020. 10. 05.	○	1/2 이상	○	○
인천	2018. 02. 26.	2019. 02. 20.	○	5이상/20이내	○	○
광주	2015. 12. 28.	2019. 03. 15.	x		○	○
대전	2016. 10. 20.	2020. 10. 14.	x		○	x
울산	2017. 04. 27.	2020. 07. 01.	○	5이상/20이내	○	○
세종	2016. 12. 20.	2019. 11. 15.	x		x	○
경기	2015. 08. 13.	2020. 11. 12.	○	1/2 이상	x	○
강원	2017. 11. 03.	2020. 03. 06.	x		x	○
충북	2016. 05. 24.	-	○	5이상/20이내	x	x
충남	2016. 02. 22.	2020. 07. 10.	○	6이상/20이내	○	x
전북	2017. 04. 14.	2019. 12. 31.	○	7이상/20이내	○	○
전남	2015. 07. 23.	2019. 06. 11.	○	1/2 이상	○	○
경북	2017. 12. 28.	2020. 06. 04.	○	7이상/20이내	○	x
경남	2016. 06. 09.	2019. 09. 26.	x		○	○
제주	2016. 06. 22.	2020. 08. 12.	x		○	○

출처: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s://www.elis.go.kr/>). 2020년 12월 4일에 인출

- 청년기본법 시행 이후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조례 개정 작업이 이루어진 곳은 서울, 대구, 경기 등임.
- 한 가지 사례를 소개해보면, 서울시의 청년기본조례는 2020년 10월 5일자로 개정되었음. 개정 사항은 위원회 명칭을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로 바꾸는 것과 역할을 ‘심의’에서 ‘심의·조정’으로, 청년위촉비율과 관련 ‘5인’을 ‘2분의 1’로 바꾸는 것임(국가법령정보센터, 2020). 그런데 서울시 조례의 청년 연령정의는 당초 청년기본법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변경됨. 이는 서울시의 청년정책 지원 대상 사업이 39세까지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 현재 지자체 청년기본조례에서 청년위촉비율을 시행령에 근거해 50%로 규정한 곳은 5군데에 그침.
- 최근 개정이 이루어진 서울, 대구, 경기도를 비롯하여 부산과 대구, 전남 등이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민간위원 중 50% 이상을 청년위원으로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0명 이내로 구성되고 6명이나 7명 이상을 청년위원으로 두도록 한 광역 지자체는 충남, 전북, 경북 등임. 25% 수준으로 규정을 담고 있는 광역 지자체는 인천, 울산, 충북 등임. 현재 청년위촉비율을 조례에 담고 있지 않은 지자체는 광주, 대전, 세종, 강원, 경남, 제주 등임.

▶ 광역지자체 청년 정책참여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광역지자체 중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참여 비율은 50%를 넘지 못함.
- 이은주 국회의원실 보도자료(2020. 10)에 따르면, 광역 지자체 중 청년위원 참여비율이 40% 이상은 곳은 부산, 경남, 울산(이상 45.0%), 서울(42.1%), 충북(40.0%) 등임. 광역시 전체 청년위촉비율은 32.6%이며 기초 지자체는 27.8%로 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시행령에서 제시한 청년위촉비율 50% 이상인 기초 지자체는 11.0%였음.
- 각 광역 및 기초 지자체는 조례 개정을 통해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청년위촉비율을 5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해당 시도 위원회 중 청년 관련 위원회의 청년 비율을 정할 필요가 있음.



출처: 이은주 국회의원실 보도자료(2020. 10: 3).

[그림 3] 시도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 청년비율(2020년, %)

- 광역 지자체 청년기본조례에서 참여기구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곳은 11곳이며 청년 공간을 제공하는 청년센터는 지역마다 편차를 보임.
- 광역 및 기초 청년기본조례에 청년 참여기구에 관한 지원이나 제안과제 채택에 관한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한편, 서울시는 조례에 별도의 조항을 두고 있지 않지만 청년시민회의는 행정기구인 청년청과 연계를 통해 의제 발굴과 예산 편성에 관한 일정 부분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어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를 보여줌. 청년시민회의는 2019년 104개 과제를 제안했으며 이중 서울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 37개 과제가 예산이 편성되어 추진됨.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2019년 37개 사업의 예산은 278억 원이며 이 중 대표적인 사업이 청년 전, 월세 지원 사업임(서울시 청년청, 2019).
- 광역 및 기초 지자체에서는 청년에게 공간을 제공하고 다양한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청년센터를 운영 중임. 지역별로 청년 센터의 역할과 기능이 상이하고 중간지원조직의 성격과 전달체계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곳도 많아 청년 공간 혹은 청년 센터에 관한 방향 설정을 제대로 할 필요가 있음.

[표 7] 광역 지자체 청년 참여기구 현황(2020년)

구분	조례 규정여부	참여기구 명칭	참여기구 인원 수
서울	x	청년시민회의(청년정책네트워크)	818(300)
부산	x	청년정책네트워크	116
대구	o	청년정책네트워크	114
인천	o	청년네트워크	44
광주	o	청년위원회	50
대전	o	청년정책네트워크	120
울산	o	청년네트워크	61
세종	x	청년정책네트워크	40
경기	x	청년네트워크	-
강원	x	청년정책자문단	49
충북	x	충북청년광장(청년정책네트워크)	100(80)
충남	o	청년네트워크	185
전북	o	청년정책포럼단	93
전남	o	청년의 목소리	71
경북	o	청년정책참여단 상상이상	400
경남	o	청년정책네트워크(온라인)	200(800)
제주	o	제주청년원탁회의	50

출처: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2020). 각 광역지자체 홈페이지 검색(2020년 11월 30). 광역시 단위에서 구성된 참여기구의 인원 수이며 현원을 확인한 경우에는 현원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모집인원을 기재함. 경기도는 청년네트워크가 민간 차원에서 구성되어 운영중으로 인원 수를 기재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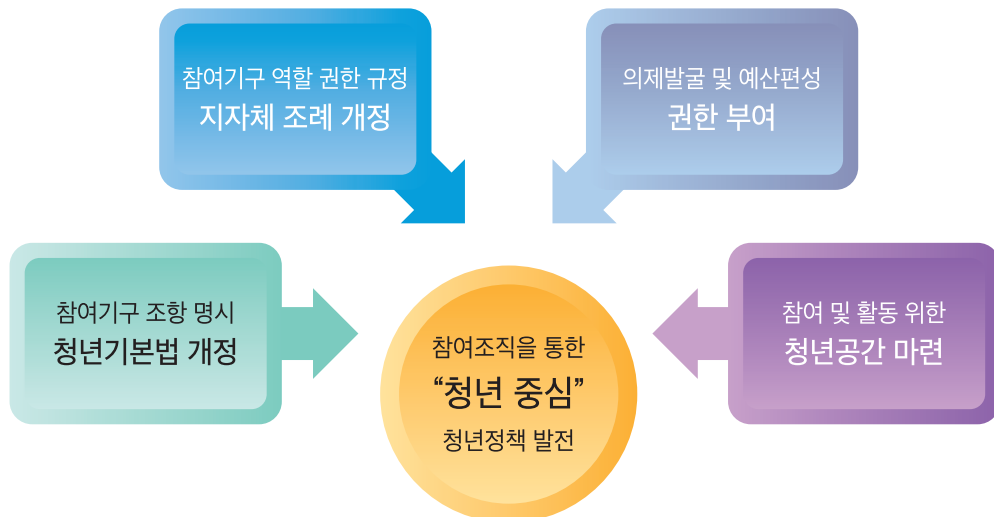
IV.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정책참여 개선방향

▶ 정부 청년 정책참여 개선 정책방향

- 청년기본법 개정을 통한 참여 관련 조항 추가
 - 청소년기본법과 같이 국가와 지자체에서 청년참여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규정 신설 필요
 - 주요 선진국과 같이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아 정책에 반영하는 참여 기구를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법률로 정책 반영방식과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명확화
- 중앙정부 청년정책 참여기구에 대한 권한 부여
 - 국가단위의 참여기구이므로 지역의 의견을 총화하는 전국청년원탁회나 전국청년포럼과 같은 방식을 취할 필요
 - 서울시에서 청년시민회의의 핵심적인 과제로 추진 중인 청년자율예산제나 지자체에서 실시 중인 시민참여예산제나 청소년참여예산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청년들이 직접 예산 투입을 기획하고 실현해 나가는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될 필요

▶ 지자체 청년 정책참여 개선방향

- 청년기본조례에 청년정책 참여 관련
 - 광역시도 차원에서는 청년기본조례를 모두 제정하였으나, 기초지자체별로는 조례제정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기초지자체의 적극적 조례제정 노력을 통해 청년정책의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
 - 청년기본조례의 청년위촉비율에도 차이가 있어 최저선 적용 필요



출처: 저자 작성

[그림 4]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정책참여 활성화를 위한 방향 제언

- 광역지자체 청년 정책참여 개선 방향

· 광역 및 기초 청년기본조례에 청년 참여기구에 관한 지원이나 제안과제 채택에 관한 조항을 추가할 필요

· 지역별로 청년 센터의 역할과 기능이 상이하고 중간지원조직의 성격과 전달체계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곳도 많아 청년 공간 혹은 청년 센터에 관한 방향 설정을 제대로 할 필요

▶ 청년 정책참여 활성화를 통한 “청년 중심(youth-centered)” 청년정책 발전 도모 필요

- 청년기본법 개정, 지자체 조례 개정 등을 통하여 청년 참여기구의 근거를 마련하고 지속적인 수정보완 필요

- 정책참여가 실효성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청년정책 참여기구에 권한을 부여하고, 참여 및 활동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청년 공간 등 마련 및 지원 필요

참고문헌

- 관계부처 합동(2020). 정부위원회 청년참여 활성화방안. 세종: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
-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2020). 청년의 삶 개선방안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 세종: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
- 김기현(2020). 청년정책 실효성 제고 방안. 보건복지포럼(2020.6.).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기현, 유민상, 변금선, 배정희, 차세영, 강정석, 이화진, 권항원, 이승호, 김문길, 박미선(2020). 청년정책 현황진단 및 정책추진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 세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이은주 국회의원실 보도자료(2020.10.). 청년 없는 지자체 청년정책 자문기구 형식을 넘어 실질적 기능 수행 위한 개선 필요.
- 조진우, 김기현(2016). 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사업 현황 및 정책방안 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United Nations(2018). Youth2030: The United Nations Youth Strategy. https://www.un.org/youthenvoy/wp-content/uploads/2018/09/18-00080_UN-Youth-Strategy_Web.pdf에서 2020년 12월 16일 인출
- European Union(2018). Youth Strategy 2019-2027.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OJ:C:2018:456:FULL&from=EN>에서 2020년 12월 16일 인출